



**조**

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 
의회정보수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 
공포한다.

1992.9.28

서울특별시시장 **이장래** ①

●서울특별시조례제2959호

서울특별시의회정보수용에관한조례  
중개정조례

서울특별시의회정보수용에관한조례 중  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관련 (별표 1)을 별지와 같이 한  
다.

제7조제1항 중 "여기는 별표 1의 현지조  
릉비 전액으로 하고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  
급한다"를 "회의장석여비는 별표 1의 현지  
조릉비 등으로 하고, 회기개시 후 필요한  
해에 지급한다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별표 1>

국내 여비 지출 기준표(제6조제1항 관련)

(단위: 원)

구 분	철도 운임	선박 운임	항공 운임	자동차 운 임	현지조릉비 (1일당)	숙 박 비 (1야당)	식 비 (1일당)	식 약 료 (1야당)
의 장 부외장	1 등급	2등 정액	정액	정 액	감지 5,000 을지 4,500	감지 17,000 을지 15,000	감지 11,000 을지 9,500	800
의 실	1 등급	2등 정액	정액	정 액	감지 5,000 을지 4,500	감지 17,000 을지 15,000	감지 11,000 을지 9,500	800

비 표: 1. "감지"는 서울특별시(직할시·도청소재지 및 기타 지역)으로, "을지"는 감  
지 의외 지역으로 한다.

2. 서울특별시 내에서의 출세 및 여행이나 출석 및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  
에는 현지조릉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.

3. 자동차운임 및 항공운임의 정액은 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하되,  
합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합인요금을 지급한다.

4. 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은 세마음으로 표시를 함하며, 양역 철도운임구분표중  
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  
급한다.

5. 수로여행시 귀회요를 회수하는 경우에는 교통운임을 지급하며, 운임의 정액은  
해운청장관인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.